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6. 1. 22.(금) 09:34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

## 제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09시 34분 개회 】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2. 국민의례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6년도 제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지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끝난 후에 다음 회의에서 접수하겠습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이 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6. 의결사항

### 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2016-04-011)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전영만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아래 후보자를 위촉하는데 동의한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후보자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으로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하여 이용호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상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정소민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혜윤 삼일회계법인 이사, 배진아 공주대 영상학과 교수, 이영철 협성대 미디어광고영상학부 교수 등 총 7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6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임기가 2016년 1월 2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7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 법령 주요내용입니다. 위원 자격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법률, 행정, 경영, 회계, 신문방송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그밖에 방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자 1명은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여기에 구성되는 위원 중에 방송 분야의 배진아 위원께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하신 분이요, 그다음에 연임하시는 분이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분들은 다 신규이고, 위원장님께서서는 이기주 위원님이 계속 맡아주시는 것이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남성·여성 성비 보니까 다른 위원회에 비해 바람직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인데 지금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간의 사례,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분쟁 사안들을 볼 때는 '꼭 방송이다', '전통적인 협의의 방송분야에서의 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송, 통신, 인터넷을 넘나드는 분쟁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고, 법적으로는 어느 특정한 분야라고 할 수 없는 부분, 경계 영역적인 이슈들도 생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후보자들 면면을 보니까 법률이나 방송분야나 모든 분들이 그런 분야의 이슈들을 커버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들 구성도 학문적인 분야가 됐든 실무 경험이 됐든 꼭 앞으로는 방송에 국한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현행 방송법 제35조의3에 보면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러이러한 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관한 분쟁'이라고 되어 있고, 당연히 방송법은 앞에서 방송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 정의는 기존의 방송 개념, 매우 좁은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방송법 시행령 제21조의3은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해서 방송프로그램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용 콘텐츠의 공급 및 수급과 관련된 분쟁조정 등등 쪽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행령이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지 못하는 것이지만 또 이 시행령만 보면 마치 콘텐츠의 공급, 수급에 관련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은 이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조금 폭넓은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방송법과 시행령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서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 놓되, 그 범위는 당연히 지금 새로이 방송통신 융합 현상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기술이 나타남에 따라 방송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한 그런 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방송 분쟁이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서 전통적인 방송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 융합, 디지털 융합 현상에 맞게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개선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이지만 법조계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이 중요하지, 재판 업무처럼 법률가들이 이렇게 비중이 많을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위원장 전부 포함해 7명, 위원만으로는 6명의 반수인데 그것도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방송통신 디지털 융합 분야의 전문가를 넣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법조 법률전문가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조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전에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 김성욱 방송시장조사과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된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가가 셋으로 동일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법률분야의 세 분 중에 혹시 방송과 관련된 업무를 일부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전혀 방송과 무관한 순수한 법률 분야입니까?

○ 김성욱 방송시장조사과장

- 지금 모시고자 하는 분들은 법원에서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셔서 특별히 방송에 특화됐다고는 할 수 없으나 조정업무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조정업무를 주로 담당하신 분들이다?

○ 김성욱 방송시장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변호사들 보면 자기 전문분야를 2가지 정도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분 중에 혹시 전임 판사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어느 분입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판사님은 강상덕 위원이십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강상덕 위원이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단순 분쟁조정 경험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정보통신 분야, 언론 분야, 법학회(...)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법 학회도 있고, 정보법학회도 있고,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인됩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이력사항을 보면 대부분 조정 경력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조정 경력만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조정 전문가가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인데 방송이나 관련 분야 경험이 있어야지..., 분쟁에만 방점을 주지 않았습니까? 물론 위원장님과 이기주 위원님께서 잘 협의해서 인선하셨겠지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것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쭙 보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기주 위원님께서 방송이나 통신 쪽에 워낙 전문가시니까 잘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런 명단이 밖에 나가면 언론이나 해당 영역에서 '이분들이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냐?', '이분들이 과연 방송 분야의 분쟁을 잘 조정할 수 있느냐?' 이것을 당연히 한 분 한 분 뜯어볼 것이지 않겠습니까? 전체 조합, 구성, 조화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느냐는 차원에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전문가도 있지만 방송전문가를 별도 두 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나름대로 과거의 전례를 참작해서 구성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분야보다는 방송분야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또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가지만 방송을 잘 아는 법률가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분쟁조정을 할 경우에 분쟁조정 위원들의 일부는 방송의 전문가일 필요가 있지만 상당수 많은 분들이 방송의 전문가인 경우 보다는 오히려 다양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쳐다보는 분이 새로운 해결방안을 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일리

는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도 장점이 있고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 구성하는데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지,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지를 논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법률분야를 계속해서 3명이 해 왔다고 하니 특별하게 위원들 개개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시라면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위원장님 포함해서 방송분야가 세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적은 수는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고위원님 다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1년 10개월간 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률가라 하더라도 지금 후보자 중에서 방송, 통신, IT 쪽에 전혀 문외한인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어떤 특정한 분쟁사례가 접수됐는데 전문성에 있어서,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금 위원들이 지식이나 이해가 낮다고 생각되면 방송정책국 해당 과에서도 검토가 되겠지만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로 해도 크게 걱정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 위원님, 저에 대해서 오늘 치켜세워 주신 것에 대해서는 팩트와는 다르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 ○ 김재홍 부위원장

- 현실적으로 개선안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저는 차라리 법률가 3명과 방송전문가 2명, 그 숫자를 바꾸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구이고 사법적 절차로 가기 전에 조정의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방송, 통신, 디지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조정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크게 중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숫자는 바꿔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꼭 법원의 경우와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경우에도 이런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법률가들이 더 수가 많고, 그다음에 전문가는 또 적은 수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지요. 일단 이번에 위원 위촉 안이 나와 있고, 또 본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승낙을 받은 사항이니까 이번에는 이 방법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속기록으로 남기고 방송정책국에도 그런 자료를 남겨서 그다음에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할 때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합시다. 부위원장님 취지도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 김재홍 부위원장

- 예, 그렇게 하시지요.

####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기주 위원님을 치켜세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해서 역할을 줄이지 않았으면 좋

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법에 관련된 근거규정을 두어야 하는, 즉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 법이나 시행령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최근에 사업자들 간의 분쟁에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지상파방송사들의 케이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VOD(주문형 비디오) 공급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자 간의 극한 대립, 그리고 일부 시청자들이 최신 VOD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침에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냐,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냐?’, 또 ‘그 기관의 어떤 과에서 담당하는지’ 이것 가지고 아침에 비판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시장에서 사업자들 간의 분쟁이 극한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원만하게 협의하고 타협해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청자들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저희 위원회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같은 행정기관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기주 위원님을 칭찬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어깨가 무거우시니까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현재 말씀하신 지상파 VOD 공급과 관련해서 케이블TV측에서 신청한 방송분쟁조정건은 지난번에 일단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하셨지요? 이기주 위원님!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현재 계속 중인 상태로 있는 것입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케이블TV측에서 분쟁조정 신청한 것은 아직 정식으로 철회를 안 한 상태라서, 하여튼 지상파와의 협의과정을 저희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저도 그렇고, 고 위원님도 그렇고, 또 이기주 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 다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6-04-012)**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재영 방송기반 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고, 매체별 특성을 반영하는 등 국회의 지적사항, 방송통신위원회 제3기 정책에 따라 방송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에 방송통신위원회 제3기의 정책과제로 공정성 관련 방송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5년 1월 발표한 방송통신위원회 '15년 업무계획에서는 재난방송 및 공정성 관련 방송평가 개선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5월부터 방송평가 개선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방송평가위원회 워크숍, 사업자 의견 수렴을 거쳐 작년 10월 개정안에 대한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행정예고를 거쳤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사업자 의견을 반영해서 오늘 수정 보완 의견을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예고에 대한 방송사업자 등의 주요 제출의견 및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예고안은 감점수준을 전체적으로 1.5배 강화하고, 방송심의 규정 중 '제1절 공정성', '제2절 객관성',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의 경우 2배를 강화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제출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송사업자,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홈쇼핑협회 등 23건의 제출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상파,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에서 언론의 비판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있었고, 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는 방송사업자의 자율적 심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채널A에서는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공정성·공공성 기준을 주로 지상파에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 모든 매체에 대해 감점을 강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언론노조에서는 방송사 내부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제도를 마련하거나 시청자 참여 보장 여부 등에 대한 점검과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TV조선에서는 방송의 공정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 평가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홈쇼핑협회에서는 홈쇼핑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 대부분이 허위·과장광고이므로 타 매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감점수준을 2배에서 1.5배로 완화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공영홈쇼핑 사업자에서는 허위·과장과 관련해서 홈쇼핑 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개별 품목별 기준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방송사업자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동일한 항목의 심의규정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만 감점을 강화하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의 자율적 노력에 대한 가점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지난번 보고 시에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금년에 방송평가 관련 연구 과제를 준 사항이 있는데 방송평가 관련 연구과제에서도 어느 정도 도출된 결과를 반영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평가 관련 연구과제에서는 시청자의 공정성 평가, 공정성 관련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외부지표 평가 반영, 그다음에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설치 및 운영 평가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장·단점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결정과 관련해서 논란을 고려할 때 동일 평가연도에 동일한 공정성 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가중·감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감점을 강화할 때에는 방송사의 자율규제 노력에 대한 가점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반영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규정 위반 관련 감점 강화 관련 보완사항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공적책임 제고를 유도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 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위반유형을 방송심의 규정 제2장 각 10개절, 광고심의 규정, 협찬고지 규칙, 선거방송심의 규정 등으로 구분하여 동일 유형의 심의규정을 3회 이상, 각 항목별로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 공정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2배로 감점을 강화하고, 막말 등 기타 규정에 대해서는 1.5배 강화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흡쇼핑과 관련해서는 허위·과장 광고 관련 3회 이상 위반 시 감점을 2배로 강화하되, 허위·과장 광고 관련 심의규정은 일반기준만 적용하고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서 개별 품목별 기준은 삭제하였습니다. 가점 제도입니다.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송사업자의 자율적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를 구축 및 운영'한 경우에 가점을 최대 6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도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해 적용되는 '공정보도를 위한 자체노력 평가'는 '공정보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여부'가 3점, '제도적 장치의 운영결과' 3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사항을 반영해서 가점 제도를 방송사업자에 확대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16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다음 주 1월 26일 공포 예정인 방송법 개정안에 따라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허용과 관련해서 방송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제재조치의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에게 감점사유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오보 방지 노력' 평가항목 신설입니다. 행정예고안은 언론중재위원회회의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에 6점,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및 허위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판결에 각 8점을 감점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전문가를 활용하여 여론조사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3점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KBS 등에서 해당 항목을 신설하더라도 감점수준을 낮추거나 합의제 중재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회의의 성격을 고려할 때 법원 판결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여론조사 전문가 활용 시 가점 부여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기준 및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중재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회의의 성격을 고려하여 행정예고안에서는 반론 보도 이런 것을 반영하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회의의 정정보도 직권결정만을 감점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며, 오보 방지 노력 등 방송사의 공적책임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항목을 신설하되 동 항목이 처음으로 신설되는 항목인 점, 그다음에 방송사업자와 시민단체의 보도기능 위축 의견 등을 일부 반영하여 감점 수준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회의의 정정보도 직권결정은 6점에서 4점으로, 법원의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 판결에 대해서는 6점으로 완화하는 방안으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기준 및 정의는 평가 세부기준 수립 시 명확하게 규정키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방송평가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예고안은 감점수준을 1.5배 강화하고, 배점을 30점에서 50점으로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편성규정 위반이 적은 흡쇼핑·SO의 배점은 현행 유지 30점이 되겠습니다. 제출의견은 방송편성과 관련 감점내역의 상당수가 방송 편성의 균형성 확보와는 연관성이 적은 방송법 제73조 방송광고 위반내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또한 방송광고총량제 도입 초기 시 의도

치 않은 위반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광고를 제외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방송편성의 다양성과 균형성 제고를 위해 감점수준을 1.5배로 강화하되, 사업자 의견을 수용해서 편성의 다양성이나 균형성과 관련이 없는 광고관련 감점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평가 지상파의 배점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송 관련 지상파에 대한 배점을 60점에서 80점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상파TV 재난방송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세부기준의 명시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예고안대로 지상파, 종합편성·보도 PP간 재난방송 배점 균형을 고려해서 지상파에 대한 배점을 80점으로 하되, 평가규칙 개정 시 세부기준을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평가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평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행정예고안은 '비상업적 공익 광고 편성평가' 척도를 신설하여 지상파 및 종합편성 PP에 적용하되, 공익광고 편성 비율 및 전체 공익광고 편성대비 시급별 편성비율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MBC, SBS, 채널A, TV조선 등에서 공익광고의 시급별 편성 비율 평가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방송사의 경영권·영업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광고 판매를 하지 않는 KBS1과 다른 방송사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방송법에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의무가 있고, 방송사가 공익광고를 시청률이 낮은 새벽이나 아주 심야시간대에만 편성한다는 공익광고 편성 관행을 개선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그다음에 동 항목의 배점을 10점만 반영해서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행정예고안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방송사업자의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행정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시청시간대 편성 평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주시청시간대 편성 평가' 척도를 신설하여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의견은 장르 간 구별기준이 모호하고, 콘텐츠 시청행태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주시청시간대 기준 변경 등 주시청시간대 편성 비율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방송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주시청시간대의 균형적 편성 규제와 주시청시간대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방송사 의견을 규칙에 바로 반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도에 방송 편성 정책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개선 내용이 마련되면 위원회 보고를 거쳐서 다음 연도나 차후에 반영하는 형태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운영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 축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예고안은 공통 운영영역 4개 평가항목을 3개로, 12개 평가척도를 8개로 축소하고, 총점은 유지한 상태로 운영영역의 배점을 축소하여 내용 및 편성영역 배점을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출의견입니다. 운영영역의 중요성, 내용영역 비중 확대로 인한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 위축 가능성을 고려할 때 영역 간 균형 있는 배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KBS, TV조선 등에서 있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시청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항이 방송내용과 방송편성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쪽 영역은 강화하고 방송사의 사업경영과 관련되어 있는 운영영역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행정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방송기술 및 방송콘텐츠 투자평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행정예고안은 현재 방송기술 투자 평가 척도에 콘텐츠 투자를 추가하여 방송기술 및 방송콘텐츠 투자 평가척도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의견입니다. TV조선은 방송콘텐츠 투자 평가기준이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고, 스카이라이프에서는 SO·위성방송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콘텐츠 투자는 SO·위성방송의 경우 삭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부기준 마련 시 평가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며,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에는 콘텐츠 투자보다는 기술투자 위주로 세부기준을 만들어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행 규칙에서 평가기준을 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율을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행정예고안은 현재 프로그램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만 되어 있는데 유통, 나아가서 제작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로 변경하고, 외주제작 관련 표준계약서 등 상생협력 노력 평가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의견입니다. 문체부 표준계약서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사적계약에 대한 과도한 침해와 방송사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방송협회와 TV조선에서 있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사업자 의견을 반영해서 상생협력 노력 평가 중 표준계약서 적용과 관련해서는 방송사의 제작 현실과 외주제작사와의 협의 내용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을 평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SO/위성의 PP 만족도 평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행정예고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채널공급 계약 시 선정기준 적정성 평가'만 평가하고 있는데 'PP만족도 평가' 척도를 추가하고 배점을 25점에서 30점으로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출의견입니다. 스카이라이프에서 만족도 평가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절차와 객관성 있는 조사방안 확보가 필요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서 설문조사 시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에서 발표했는데 이에 따른 설문문항 구성 및 평가대상자의 대표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마지막으로 홈쇼핑 PP의 '한국소비자원 민원 평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행정예고안은 소비자원 민원 평가 20점을 신설하고, 소비자원의 구제조치 건수 등을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의견입니다. 홈쇼핑협회에서는 소비자원 민원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제조치 건수 평가 구간의 확대가 필요하며, 구제조치 건수 외 민원건수 등을 평가한 경우에는 소비자원 접수민원 미처리 비율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평가규칙 개정 때마다 세부 산식 기준을 개정할 때 사업자 의견을 반영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사업자 제출의견과 검토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행 평가규칙과 행정예고안 및 수정안 비교사항을 <표>로 작성하고 <별표>로 작성했습니다. <표>는 앞에서 보고 드렸던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평가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주시면 '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1/4분기까지 규칙 개정에 따른 세부기준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 김재홍 부위원장

- 이 안건은 방송평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이기도 하고 제가 처음부터 이런 중대 논란이 많은 안건은 상임위원 간 합의를 거쳐서 해야 한다고 상정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안건은 여러 차례 티타임, 간담회..., 최소한 제가 제 기억으로 세 차례 있었습니다만 토론, 논란이 많았습니다. 엇그저께 간담회에서도 논란 끝에 합의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안건을 올릴 때마다 합의를 해야 하느냐? 대체로 반대의견이 있어도 의안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그런 안건은 최소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부에서는 합의를 이루고 충분한 사전 토론도 하고, 그리고 공개해야 하는 전체회의에서는 의결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중대한 안건이나? 논란이 많았느냐?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규범인 우리의 헌법상 매우 중요한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학계와 전문가 단체, 언론인들 다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건은 통과시키기 위한 전체회의에 올리기 전에 상임위원 간 토론과 합의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 합의를 거치지 않고 다수 의사에 따라 이렇게 전체회의에 올린 것입니다. 다수 의사로 상정했고 오늘도 다수결로 의결 통과시킬 것입니다. '헌법적 문제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에 관한 문제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논란이 많은 안건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많고 합의가 안 된 것인데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다수결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지배적인 결정방법이다, 그것은 아닙니다. 다수결의 횡포, 다수결의 전제 때문에 많은 민주적 제도들이 파괴됐고 그런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도 그렇고 세계사에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위원들의 의견수렴, 합의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이고 국회의 요구입니다. 그것을 거치지 않은 안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차적 정당성 문제, 내용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우리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너무 지키지 않았습니다. 첫째 저는 방송평가위원장으로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최소한 3차례 워크숍을 포함해서 심의하고 토론을 거쳤습니다만 이 방송평가규칙은 그 규칙을 실행에 옮기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방송평가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방송평가위원회에서 발의되고 전체회의에 올라와서 여기에서 토론하고 의결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사무처가 만들어서 위원장의 사인을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준하는..., 그 시행주체인 방송평가위원회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거기에 반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방송평가위원회가 발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최소한 3번 정도 워크숍과 함께 심의하고 토론을 거쳤습니다. 위원장만 상임위원인 제가 말고 나머지는 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입니다. 7명의 평가위원 중에 한 분만 유보적인 의견을 냈고 6명은 반대입니다. 절대 다수가 반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을 이렇게 강행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차 문제는 행정예고를 한 달간 했고 그때 의견수렴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올라온 의견수렴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언론사, 방송사들은 이해당사자다, 그렇지만 이런 헌법적인 가치에 관해서는 국민, 이해 당사자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언론 기관 말고도 예를 들면 신문방송편집인협회, 방송협회는 이해관계자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 방송학회와 정치평론학회의 공개 토론 세미나에서도 거의 모든 교수들이, 학자들이 이것은 곤란하다고 반대한 것입니다.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런 시민단체, 전국언론노조는 그냥 시민단체도 아닙니다. 법정기구입니다. 법정단체입니다. 그런 단체들이 전체 다 이것은 안 된다고 반대한 것입니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전문성 있

게 검토 연구하기 위해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방송학회 교수들에게 정책연구과제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수들은 그 용역을 맡긴 주체, 정부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아닌 말로 눈치를 봅니다. 거기에 전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회에서 다 반대의견이었고, 그 논문 결과는 아직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의하고 방송평가위원회 의견을 또 참고해서 전체회의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 저는 이것은 곤란하다, 방송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방송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법, 그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여러 방안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수결에 따라 강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방송 공정성 강화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방송 공정성 강화의 방법이 문제입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인다고 해서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거의 유일하게 맡겨진 방송내용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그 별점을 2배로 강화하겠다? 이것은 위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보·막말·선정주의 방송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오늘 사무처에서 보고한 내용 전체적으로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 독소사항, 말하자면 방송 공정성·객관성 선거 보도에 대한 심의와 그 결과에 대해서 별점을 2배 강화한다는 것은 결단코 위헌적이고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침해한다, 자유언론을 침해하므로 반대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재도 심의하고 있고 공정성·객관성 심의하고 별점을 주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것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제도를 개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엇그저께 오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한 뉴욕타임즈의 날짜를 틀리게 보도한 어떤 방송사가 있습니다. 저는 날짜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사를 해 봤지만 날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날짜 틀린 것을 문제 삼아서 오보인지 법정제재 ‘주의’를 줬습니다. 단 하나의 예입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 역시 많은 논란과 국민 여론 질타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라고 불러서 대답하면서 이런 발언이 방송된 것입니다. “국정원 이야기만 나오면 야당은 발작적으로 적개심을 표현한다. 새정치연합은 어느 편에 선 조직인가? 최소한 한민족의 편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최소한 법정제재 ‘주의’ 이상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들이 “그것은 정치 평론상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법정제재는 과하다. 행정지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3 다수결 의결 구조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 6:3은 정부여당을 맡은 정치세력이 결정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세력이 끌어가는 기구에 방송 언론의 공정성·객관성을 맡기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의 헌법적 규범을 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송통신심의의 법률과 제도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든지, 축소하든지 그리고 언론사, 방송사의 자율심으로 대폭 전환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토론을 거쳐서 전문성 있게 검토해야겠지만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발언상 필요한 부분은 그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권한을 더 강화해서 방송 언론의 공정성·객관성, 선거보도 심의를 맡긴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다? 그 별점을

2배로 올린다? 이것은 결단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합의가 안 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할 사항인데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에도 민주주의와 우리 헌법의 기본가치, 규범을 깨서는 안 될 틀이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부의 다수결에 따라 이것을 고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결단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안건의 상정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토론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다수결로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더 반대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할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저는 이것으로 퇴장하겠습니다. 여권 위원들 마음대로 하시든지, 나머지 위원들..., 저는 이 안건 상정 자체를 반대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반대는 하셔도 논의는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논의 많이 했지 않습니까? 논의 많이 했습니다.

(**김재홍 부위원장 퇴장**)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부위원장님 의견만 장황하게 이야기하시고 제가 이야기하려니까 퇴장하시네요.

○ **최성준 위원장**

- 글썄요. 원래 합의를 중시하시는 분인데 본인의 의견 이외 다른 분의 의견은 안 들으려고 하시네요.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우선 방송기반국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4페이지에 '선거방송 심의규정 등으로 구분해서 3회 이상 반복적 위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회 이상 반복한다는 것이 '2장 10개절 광고 심의, 협찬고지, 선거방송심의 규정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룹별로 각각 3회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맞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 표현이 명확치 않습니다. 더 제한적인 경우에 대해서 공정성 관련 감점을 2배 강화하겠다는 뜻인데 그 표현이 명확치 않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 앞에 검토결과에 '사업자 및 시민단체 의견을 수용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수용한다'는 말이, 위에 쪽 정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인 방송사업자나 협회나 여러 단체들이 제출한 의견을 쪽 정리해 놓고 '이상과 같은 의견을 수용하여' 이 말을 했는데 '수용'

이라는 말을 여기에서 어떤 뜻으로 쓴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예고안이 0이라고 하고, 예를 든 것입니다. 척도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제시한 그러한 것들을 몽땅그러서 1이라고 했을 때 오늘 보고한 안은 이러한 것을 수용한 일종의 수정 의견이지요. 그 수용한 것이 0과 1 사이 어디쯤에 위치하는 것을 수용이라는 말로 쓴 것입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저희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 이기주 상임위원

- 논의의 편의상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방송사업자가 담당 제작자 등의 실수로 1회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감점 강화 대상이 아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수용했다’ 이 말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클리어하자는 취지인데 우리가 보통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행정예고 기간 중에 의견수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당초 행정예고한 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 전적으로 100% 다 수용해서 의견대로 수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 중간에 어디에선가 절반 정도 수용을 했다든지, 70% 수용했다든지, 30% 수용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수용이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30% 수용이냐, 50% 수용이냐, 70% 수용이냐, 100% 수용이냐, 사무처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수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저희는 사업자 의견을 거의 대부분 많이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송사업자가 공정성 노력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만 그것에 대해서는 감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고, 한두 번 담당자 제작자나 토론자의 실수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자유를 반영해서 감점을 강화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냥 수용이라고 하면 자칫 의견을 다 수용한 것처럼 될 수도 있는데 저도 김 국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양적으로 정확히 표시할 수는 없지만 이 의견들을 대폭 수용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부의 이해관계자나 이런 단체의 의견뿐만이 아니고 김재홍 부위원장님 의견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의견을...,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내부 논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고 극단적으로 김재홍 부위원장님 의견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수용한 안을 오늘 사무처에서 보고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배 강화한다는 것도 아주 제한적으로 3회 이상 반복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다 구분해서 '그룹별로 3회 이상 반복 시'라는 것은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당초 행정예고안보다는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가점까지 부여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사무처에서 각각의 사업자별로 과거에 감점 받은 것을 새로운 개정안을 가지고 적용해 본 그 자료를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당초 행정예고안에 비해 감점의 정도가 많이 낮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폭 수용'이라는 말이 적정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이 안 제시한 한데 말씀하신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상당히 다른 의견이 있어서 간추려서 몇 가지만 덧붙이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에 김재홍 부위원장님은, 이 건과 관련해서 많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동료 위원님의 의견을 경청하고 가급적 존중하려고 했지만, 오늘도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대단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견을 말씀하셨다, 결국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고 합의정신을 줄곧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다섯 분의 위원들 간의 의견을 모은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다, 토론을 한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다섯 분의 의견이 똑같아야 한다, 어느 한 분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분 의견에 따른다, 이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또 부위원장님이 늘 기회 있을 때마다 헌법적 가치, 언론의 자유, 자유민주주의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무처도 그렇고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 헌법 공부 안 한 분 있습니까? 저도 대표적으로 그런 공부를 다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평가라는 것이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김 국장님, 공정성 평가 처음 하는 것입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아닙니다. 최초부터....

○ 이기주 상임위원

- 지금까지 쪽 해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점이고, 감점이고 이 기준을 조금 현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이 시점에서 느닷없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든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든지 이런 주장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절차적 정당성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평가위원회가 됩니까? 제가 방송법을 봤습니다. 방송법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평가위원회는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평가업무를 집행하는 데입니다. 평가규칙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고유 업무이지, 평가위원회에서 폭넓게 운영해서 자문을 받는다는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룰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7명 중 1명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6명이 반대했다는데 저희가 위원님 다섯 분 간 내부 토론을 하면서 평가위원회 의견수렴한 폴 텍스트를 다 봤지 않습니까? 사무

처, 다 정리 안 했습니까?

○ **김종영 편성평가정책과장**

- 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기억에 '6명이 반대하고 1명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것은 전혀 팩트와 다른 주장을 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견을 대폭 수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확히 몇 퍼센트를 얼마만큼 이라고 수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상당 부분 의견을 수용했다고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위원님들 간의 의견수렴, 토론 과정에서도 아주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긴 하지만 그것을 많은 부분 존중해서 오늘 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용역과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는 용역과제에 대해서 정부의 눈치를 본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분 이야기해 보십시오. 과제 수행하는 분들이 누구 눈치를 봤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 말씀들이 이해가 안 가고 동의도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용역과제를 누가 하셨는지 저는 이름도 기억이 안 나지만 페이지 상으로만 본 적이 있고, 그런 용역과제를 수행한 분과 접촉한 적도 없습니다. 끝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법적으로 컴플레인 할 수 있는 내지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의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다, 위헌적인 성격이다, 이런 주장은 저는 너무나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잠깐만 그 전에 자꾸 방송평가위원회가 나와서 분명히 하기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방송평가위원회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방송평가위원회의 직무로 '방송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 제안' 이것뿐입니다. 마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방송평가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해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로지 방송평가위원회는 방송평가에 관한 사항, 그 평가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관한 내용들을 심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그 권한만 있다는 것을 현행 규정상 명확히 나와 있어서 밝혀 드립니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김재홍 부위원장님께서 길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기주 위원님께서 길게 말씀하신 것을 중간에 안 끊었습니다. 일단 논의의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꼭 지금 이렇게 사실상 강행처리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하냐는 것입니다. 왜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됐는지 저는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반대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 내부에서도 물론 소수이지만 부위원장님과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는지, 그 생각을 안다면 조금 더 숙려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으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의견 내는 중에는 위원장님도 그렇고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김석진 위원님도 그렇고 언제든지 토론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른 안건에 비하면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이기주 위원님께서 방송평가위원들의 의견에 대해 부위원장님과 보는 시각이 다른데 저는 부위원장님과 비슷하게 봤습니다. 방송평가위원들 다수는 이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 안건이라는 것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안건이라는 것은 행정예고한 안건이고, 저희가 행정예고한 것에 대해 지금 의견을 상당히 수렴해서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개선안에 대해 논의한 것은 아니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원래 행정예고안, 처음 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여기에 제출된 의견을 보면 사업자, 사업자단체, 시민단체 할 것 없이 이렇게 동일하게 반대의견을 많이 냈나 싶기도 합니다.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서 저희 내부 논의가 수차례 있었고, 또 일부 반영이 된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 방송심의 결과를 방송평가에 2배 이상 반영하자, 이런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해야 하는 것인지,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장님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절차적으로 이렇게 반드시 오늘...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 부분을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잘 아시는 것처럼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은 원래 연말까지 개정해서 그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방송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은 지금 2016년 방송에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방송기반국장이 보고를 하면서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 제3기 정책과제와 특히 2015년 업무계획을 저희가 발표하면서 이 업무계획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그다음에 사무국 전체가 다 의견을 모아서 만든 업무계획입니다. 그 업무계획에 보면 2015년도 업무내용 중에 재난방송 및 공정성 관련 심의규정 위반 시 감점 강화라는 것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3기의 원래 정책과제에 들어있던 것이고, 2015년의 업무내용으로 들어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방송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이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이 정해져야만 방송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지, 마치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자꾸 밀어붙인다고 하는데 저희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 일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국장님, 이것이 만약에 의결이 되고 시행이 되면 평가는 어느 때 자료부터 적용합니까? 이미 금년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편성이나 방송 다 이렇게 했는데, 쉽게 말하면 소급적용할 수 있습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저희가 시행령 관련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대로 오늘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서 2016년 2월 1일 방송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이 저에 대해서 반론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제대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즉, 월 단위로 끊을 수 있고, 분기 단위로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이견을 좁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한두 번 더 논의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설사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오해가 해소되면서 이 안건이 심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일일이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업무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방송평가에 관한 평가제도 개선을 비롯해서 몇 가지 합의를 할 때 이견이 있었던 것들을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동시에 그런 합의도 했습니다. 뭐냐 하면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수신료 인상안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개편, 즉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영방

송의 지배구조 개편 논의도 하자' 이런 공감대가 잠정적으로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제3기 정책과제에 포함하기에는 부적절하니 추후에 논의하자고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종합편성 PP 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편성 PP 운영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편성 PP 정책이 제대로 시행이 됐는지, 수정할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자' 이것도 제3기 정책과제 마련 당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현재 논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정책과제 중에 어떤 것은 반드시 시기를 정해서 처리해야 하고, 또 어떤 사안들은 논의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위원 간에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시다만 당연히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시기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다른 기관의 여러 가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조치들과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 위원회가 방송평가 제도를 급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더 소명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이 민감한 시기에 몇몇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하는지, 그것은 제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장들도 퇴임하기 직전에는 기관의 인사를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안 하지 않습니까?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를 넘겨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지금 시점에 이 부분을 강행처리하는 것에 대해 납득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앞서 부위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방송심의 결과를 방송평가에 반영하는 비율을 상향하자, 이 전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과의 신뢰성·공정성·객관성 이러한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대단히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앞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며칠 전에 방송심의소위에서 심의 관련해서 파행이 발생할 정도로 크게 충돌했습니다. 제가 꼼꼼히 따져 봤습니다. 이 안건을 심의하면서 도대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어떻게 했기에 고무줄 잣대, 이중잣대, 정치 심의 이렇게 비판을 받는지를 한 번 쪽 추세를 살펴봤습니다. 가깝게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 그다음에 메르스 사태, 세월호, 멀리는 천안함 피격사건, 광우병 파동, 그리고 국정원 선거 개입 이런 것을 보면 권력에 비판적인 방송사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댁니다. 중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이나 야당 정치인, 그리고 시민단체나 노조의 정부 비판에 대해서는, 패널들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한 잣대를 들이댁니다. 그래서 '권고'라든가 이런 경징계를 내립니다. 이런 트렌드가 관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제3기가 출범하고 그때 정책과제를 논의했을 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해서 운영된 이후에 이러한 정치심의 논란, 이중잣대 논란 이런 것들의 결과들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너무 두드러지게 드러난 상태에서 그 심의결과를 방송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강화하자,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런 심의운영과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어떤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혹시 저희가 방송평가에 방송심의 결과 반영을 강화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습니까?

####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이것은 저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 일반적인 행정예고 차원에서 의

건을 수렴했고, 거기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계속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출범 당시의 상황과 지금 1년 반 지난 뒤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논란들이 빚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바로 수용해서 방송평가에 반영해야 합니까?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아니지요. 그래서 예전에 방송심의결과에 대해서 재심 요청이 들어올 때 그리고 소송 들어갈 때 어디가 당사자입니까? 저희가 당사자입니다. 물론 그것을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민간기구로 만들어 놓기 위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판결을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행정기관처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손을 아예 못 대는 것입니까? 그것 관련해서도 대선공약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심의 대상들을 개선하겠다, 왜 이런 것들은 전혀 개선이 안 됩니까? 그것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맡겨 놓아야 합니까?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는 의견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고 위원님, 저만큼 하신 것 같은데….

○ 고삼석 상임위원

- 토론하셔도 됩니다. 저는 몇 가지 선결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과연 이대로 운영되도록 방치해야 하는 것인지, 저희는 단순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결과를 내놓으면 그것을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 이기주 상임위원

- 토론은 이따 하기로 하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쭙 보겠습니다. 고 위원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이 있다고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의견 정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의견을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어디에 의견을 냅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의견을 전혀 못 냅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구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해 보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 심의결과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자꾸 그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법령 재개정처럼, 제도개선처럼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는데 그것을 늘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번 기회에 한 번 따져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공약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개선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추진해야 합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체적으로 추진합니까? 그것 한 번 나중에 분석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재홍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물론 그렇습니다. 방송의 다양성, 소수자 보호 이런 것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진국에서도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들 국가에서 우리나라처럼 방송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가지고서 논쟁이 되고 있는지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대체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심의제도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현재 방송사의 자율심의가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국가적, 반인륜적 사안 외에는 거의 심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심의 제도의 운영 실태를 보면 분명한 것은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된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것은 지난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저희가 보고할 때 양측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아니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방송심의 운영을 그대로 놓아둔다면 2가지 핵심적인 국정과제에도 반드시 역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문제제기할 것이 있습니다. 방송평가를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장님, 방송평가를 하면 어떻게 활용하시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지금 저희는 방송평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큰 정책으로서 방송프로그램의 품위나 품격을 향상시키고 여야 국회에서 계속 지적해왔던 것처럼 막말이나 선정방송, 편파방송을 자제토록 하는 그런 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누구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엇그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권 추천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뭐냐 하면 “특정 종합편성 PP의 특정 프로그램, 그리고 거기의 진행자는 정말 아무리 주의를 줘도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본다. 그런데 참 안 지켜져서 나도 답답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여권 추천 위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나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여과되지 않은 표현에 대해서는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재할 때는 경징계를 한 것입니다. 법정제재가 아니라 ‘권고’를 한 것입니다. 아주 실효성 없게 운영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방송심의 제도의 무용론이 제기되도록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2014년에 종합편성 PP를 재승인했습니다. 국장님, 2014년에 했지 않습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내년에 또 하시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2014년 재승인할 때 어떤 여론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의견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의견들이 있었지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2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저희 관련된 업무가 아니어서...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도 하는데, 2가지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리니까 크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2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오보·막말방송·편파방송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다” 이런 의견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왜 종합편성 PP로 승인을 받았으면서 보도 PP처럼 운영이 되느냐? 왜 투자하지 않느냐?” 이것이 크게 비판됐던 2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 2가지 부분에서 엄격하게 평가했다면 그때 당시에 1개 내지는 2개 종합편성 PP의 승인이 거절되었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고스란히 4개를 다 재승인해줬지 않습니까? 제가 특정 종합편성 PP에 대해서 승인하라, 어떤 종합편성 PP는 승인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엄격히 평가해서 그것을 심사에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됐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평가의 신뢰성도, 그리고 재승인 제도의 신뢰성도 그때 다 잃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당장 종합편성 PP들에 대해 재승인 심사를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방송평가를 통해 오보·막말·편파방송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엄격히 적용할 수 있습니까? 정치적 심사 결과가 안 나온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이 이 평가규칙 개정과 어떻게 관련이 됩니까? 이것이 자꾸 너무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다른 부분은 다 듣겠는데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마치 제2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를 중론에 반해서 제대로 못 했다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비록 다른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전 방송통신위원회위원회에서 한 결정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리해 보면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그것을 적용해서 방송사를 평가한다면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변화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공정성이 확보가 되고, 객관성도 증진되고 오보 방지도 되고, 막말·편파방송도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투자,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의견 수렴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조정도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안전에 대해, 오늘 다수의 의견에 의해 처리하기보다는 제 생각은 한 번 정도 더 숙려기간을 가지고 의견을 모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고, 지금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 서로 추가 논의해서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부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서로 계속, 물론 저희가 그 전에 여러 차례 논의를 했지만 오늘도 또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을 계속 들으시고, 뭔가 상대방의 의견과 본인의 의견을 서로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생각도 해 주셔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추가로 논의하면 저렇게 상대방의 말씀을 안 들으시겠다는데 이것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자신이 없습니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김재홍 부위원장님께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 그래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퇴장을 하셔서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김재홍 언론계 출신 선배와 함께 이 문제를 정말 과연 어떤 것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하고 싶었는데 먼저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저는 생각이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평소 갖고 계신 생각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적 가치를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거대담론을 굳이 우리가 들먹이지 않더라도 제가 30년 언론생활을 해 온 사람으로서 가장 절박하게 느끼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현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언론계, 시민단체, 사업자단체 전부 이번 규칙 개정이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것이라라고 지적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자도 규제를 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피하고 보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기관입니다. 정부기관에서는 틀을 만들어내는 이런 엄중한 직무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자단체, 사업자 입장에서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서 너무 그쪽 의견을 반영한다고 한다면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선거방송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언론자유를 침해한다, 자율적 기능에 맡겨야 한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율적 기능이 안 됩니다. 제가 직접 보도를 지휘해 보고 선거방송도 지휘해 봤습니다. 지금 4년 전 총선 때와는 또 환경이 다릅니다. 언론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에 종합편성 PP도 생겨났고 보도 PP도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청률 경쟁이라고 하는 무한경쟁 속에 언론환경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자율적인 기능에 맡기겠다? 이것이 다 생방송으로 이루어지는 방송들인데 출연자가 나와서 어느 한쪽으로 경사된..., 여든, 야든 마찬가지로입니다. 여당 쪽을 편들든 야당 쪽을 편들든 일방적으로 경사된 편파적인 내용의 방송을 할 때 사후규제로 우리가 그것을 규제하겠다는? 이미 시청자들에게는 이것이 다 전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편에 더 유리하느냐는 것은 따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편파보도입니다. 편파방송입니다. 그래서 틀을 우리가 엄격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것이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공정방송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은 시청자들이, 유권자들이 판단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그쳐야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몰아간다는가, 가치를 강요한다는가, 표심을 자극해서 어느 한쪽을 유리하게 한다는가 그것은 우리가 막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도 선거에 정치적으로 엄정 중립입니다. 그러면 그 기능을 하기 위해 고민하고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규칙을 만들어 내느냐 하는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작업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단을 가지고 '이것은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규칙을 개정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게 한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직무유기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규정을 엄중한 입장에서 한 번 들여다봤더니 오히려 실효성에 의심이 갈 정도로 당초 행정예고된 것보다도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여기 보면 3회 이상 동일한 사안을 이것도 포괄적으로 3번만 하면 삼진아웃이 아니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할 때에는 공정성 관련 2배의 벌점을 강화한다. 그러면 2번은 세계 아주 비판적으로 편파방송을 하고 막말을 하고 그렇게 방송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또 여든 야든 어느 일방적인 주장을 2번은 세계 하고 3회째는 참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그냥 거기까지만 안 가면 벌점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이미 거기에 대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데도 3회 이상, 이것은 굉장히 완화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 벌점을 만회할 기회를 또 주고 있습니다. 자율규제 제도를 구축해서 운영한 경우는 최대 6점 까지도 가점을 줍니다. 그러면 벌점으로 2점 뺀다고 4점을 또 자율기구를 만들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양보한 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기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시민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대폭 수용했다" 이런 말이 수공이 갈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방송사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감점사유로 반영하지 않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또 법원에 제소를 할 경우에 재판이 송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또 벌점 부과가 유예되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반영되지 않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렇게 되면 어떤 방송사가 특정 목적의식을 가지고 여든 야든 제가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든 야든 어느 쪽이 유리할지도 모를 어떤 방송을 막 해달 때 그것을 3번까지만 안 가면 된다? 그리고 또 가점만 받으면 또 만회될 수 있다?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저는 일부 위원님들께서 우리나라 언론자유의 침해를 걱정한 데 대해서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방송 현실을 감안할 때, 시청률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과연 우리가 틀 만드는 것조차도 자율에 맡긴다, 자율에 안 맡겨집니다. 그것은 제가 30년 방송생활을 해 봐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예를 들어봅시다. 지난 총선 때도 어떤 방송에서 막말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한 정당, 야당을 편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야당이 유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의 출연진에게 사전에 원고 받아서 합니까? 사전검열 못 합니다. 출연자를 섭외하다 보면 여당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야당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든 야든 균형을 일단 잡아야 하니까 토론을 할 때 또는 방송보도를 할 때 여당 편 한 분 A라는 논객을 데려 왔다고 칩시다. 이쪽은 야당 편으로 B라는 논객을 데려 왔는데 둘이서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싸워 주어야만, 논쟁을 벌여 주어야

만 그 방송이 산술적으로 공평하게 되는 것입니까? A라는 사람이 더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논리 정연한 체계로 설법을 시켜서 보는 시청자들이 거기에 저 사람이 더 잘했다고 판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식으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방송의 영역입니다. 그 방송영역을 예단해서 무조건 어느 한쪽이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규칙 제정마저도 하지 못하게 해서 틀조차도 만들지 못하게 한다면 그런 직무유기에 나중에 책임이 돌아왔을 때 우리 정부가 무슨 뉘대로 일을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야기를 두 분께서 하셨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과도하게 불합리한 제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그 기구를 통하지 않고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수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삼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개선방안이 없는지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저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거기에 심의가 맡겨져 있는 기능이 있는 이상 방송프로그램 편성 자율권을 침해하고, 또 간섭을 우리 규제기관이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별도의 기구를 6:3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야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당 쪽에서 추천받은 분들이 잘 설득을 시켜서 여당 쪽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과 공감대를 이루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 내도록 하는 것은 거기에 맡겨진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예단을 가지고 '무조건 여기에서 나오는 결정은 신뢰할 수 없다' 이것도 예단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개선책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글로벌 트렌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방송 자율심의, 다 선진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겠지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굉장히 방송환경이 바뀌어 있습니다. 아마 눈에 불을 켜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종합편성 PP들도 많이 생겼고 보도 PP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또 지상파도 마찬가지로 서로 경쟁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그렇게 방송을 해 나가는 것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엄격한 틀을 하나 만들어 주고 규제의 규범을 만들어 준다면 방송사들도 그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서 고마워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왜? 출연자 교섭할 때, 또는 사전에 방송할 때 '당신은 여기에서 너무 과도하게 한쪽을 편드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상당한 제재를 받는다' 하고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방송사가 고맙게 생각할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우리가 꼭 여기에서 해야 하느냐 하는 두 분의 말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지적도 저는 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급합니다. 우리가 직무유기하면 안 됩니다. 선거 앞두고 빨리 틀을 하나 만들어 주고, 그리고 오보 안 하고 편파방송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틀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단을 가지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급성을 요한다고 보고 여기에서 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짧게 해 주시지요.

## ○ 고삼석 상임위원

- 부위원장님 안 계신 상태에서 3:1로 가려니 부담됩니다만 김석진 위원님께서 현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점 중 하나는 제도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현재 운영하는 분들, 특히 심의와 관련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의 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만 아무리 잘 만들면 뭐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심의 권한이 '조자룡 현 칼 쓰듯이 행사되고 있다, 휘둘러지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반박이라기보다도 보는 견해의 차이입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의 막말효과, 이것이 그 후보자의 막말로 인한 효과였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맥락을 완전히..., 물론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특정 표현들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때 팟캐스트로 주로 나갔으니까 청취자나 시청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그 맥락 전체를 정확히 보도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즉, 탈 맥락적 보도와 그리고 특정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정 부분에 대한 반복, 강조방송으로 인해서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김석진 위원님께서 저의 의견에 동의해 주신 것은 "좀 더 큰 틀에서 고민하자" 솔직히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평가 제도 고치느냐, 마느냐 가지고 이렇게 길게 논의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큰 틀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제고, 공적책무 구현을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방송평가 규칙을 개정할 때는 좀 더 큰 틀에서, 예를 들어 공영방송 시스템에 대한 문제나 종합편성 PP들이 좀 더 종합편성 PP 답게, 그리고 밖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오보·편파방송·막말방송 이러한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지요. 저희도 마련하고 종합편성 PP들도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도개선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큰 틀에서의 고민, 분명히 같이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의 분명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고, 혹시 또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평가의 큰 틀에서의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시간이 되는 대로 앞으로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고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가 사전 토론할 당시에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내용 중에 다른 부분은 다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반대하시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나 하면 13개로 구분되어서 3회 이상 반복할 때 공정성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는 2배를 강화하고, 막말에서는 1.5배를 강화하는데 그 항목 중 공정성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공정성, 객관성, 권리침해, 재난방송, 윤리적 수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객관성 부분은 오보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의가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

## ○ 고삼석 상임위원

- 아닙니다. 이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아까 부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오보에 대해 가중하는 것은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고 위원님은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방송에 대해서도 또 가중하는 것은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유일하게 반대하시는 부분이 공정성, 그다음에 고 위원님은 공정성 플러스 객관성 그 정도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 이외에 대해서는 이 항목뿐만 아니고 다른 평가규칙 개정에 대해 전혀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파악한 것이 맞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크게 위헌이다,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서 민주적인 가치를 침해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좀 더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점을 강화하는 것이 결국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세간에서 선거 앞두고 왜 선거에 무슨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등등의 말씀이 나오시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거에 관련된 것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지요. 그렇습니까? 방송기반국장님!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선거방송...

○ 고삼석 상임위원

- 하나만 사실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이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보좌하는 사무처 기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에서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부정적인 견해도 있고 편파적이라는 견해도 있는 것은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선거방

송심의회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여야로 구성이 되어서 편파적이다, 그런 이야기는 과묵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그 위원들의 구성에 여야뿐만 아니고 시민단체까지 다 참여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결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중립적이지 못하고 그런 편파적인 심의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체적으로 예를 드시는 것이 크게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아까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엇그제 있었던 것에 대해서 법정제재를 해야 할 것을 행정지도로 낮췄다. 그래서 심의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됐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의 방송평가 규칙의 감점강화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별도의 문제인 것이지, 법정제재가 아닌 행정지도로 하는 것과 이것과 연결해서 거기가 그렇게 부당하니까 이 규칙은 개정하면 안 된다는 것과는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법정제재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법정제재를 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듯이 법정제재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법정제재를 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다룹니다. 지금까지 그런 논란이 됐던 것이 한 번도 소송으로 안 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몇 건은 결론이 뒤집히기도 했지만 또 상당수는 법원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저희는 그것을 방송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가 과연 평가규칙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과연 심의가 무용이다, 편파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언론 자유 침해, 이 평가규칙과 관련해서 과연 그것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로서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법 제32조가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방송법 제32조가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계류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더 선진적인 방송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제32조의 적정성에 대해서 얼마든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논의해 볼 수 있지만 현행법 하에서는 이 규정이 그래도 제일 낫다고 생각해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 평가규칙을 만드는 것이 왜 위헌이고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행정예고했던 것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굉장히 뒤로 많이 물러섰습니다. 그것은 쪽 주장하시는 것처럼 방송사업자뿐만 아니고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러서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또 방송평가 규칙에 새롭게 가점에 관한 규정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로 다시 돌아가면 부위원장님이나 고 위원님께서 반대하시는 것이 공정성·객관성에 대해서 감점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고 나머지는 적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막말은 1.5배 강화합니다. 그러면 막말과 공정성·객관성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 하면 그 어느 누구도 공정성·객관성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 막말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균형이라는 점도 또 생각 안 해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마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런 경우나 저런 경우가 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자꾸 그것을 연결시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규칙 개정에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큰 틀에서 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책,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아니면 더 높은 차원에서 다른 데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은 저는 아직 특별한 생각은 없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제도적인 개선의 문제와는 별론으로 하고, 지금 현행 제도 내에서 벌어지는 일과 과연 반대하시는 부분이 연결되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국장님께 한번 여쭙 보겠습니다. 고 위원님은 자꾸 “좀 더 뒤로 늦춰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작년 말까지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을 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보고를 보면 2016년 2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원래 방송평가라는 것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방송된 것이 2017년에 평가가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 2017년 12월 그 무렵에 나오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그것이 1년 단위로 되면 이것이 2월 1일부터 이 규칙이 시행됐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평가규칙이 적용되는 시점이 2월 1일부터 한다면 2월부터 12월까지는 개정된 평가규칙으로 산정하고 1월은 전년도 지금 현행 평가규칙으로 산정해서 합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규칙 개정이 조속히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행 규칙과 개정된 규칙은 평가항목이나 평가척도들이 일부 변경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합산하더라도 현행 규칙 적용되는 부분이 가장 최소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안 계시는데 자꾸 부위원장님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부위원

장님께서 지난번에 방송평가규칙 보고받을 때도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런 방법 말고 어떤 다른 방법을 제안할 것이 있으십니까?”, 또는 “방송평가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까?” 말씀드렸더니 “방송평가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가 나가 있으니까 그 결과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연구용역 결과가 왔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이런 평가에 관해서 아까 국장님 보고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것도 아니고 저희도 생각해 봤던 부분이지만 시청자의 공정성 평가 부분이 하나 더 제시가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강화하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강화를 한다면 이런 보완책을 했으면 좋겠고 등등 그런 의견들, 우리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범주의 의견들이 나와 있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시청자의 공정성 평가에 관해서도 몇 가지 안을 제시했지만 다 안정성,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신뢰성 문제 때문에 최소한 수년간의 연구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학계에서도 연구해 본 결과,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고, 앞으로 수년 후에 시청자의 공정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마련된다면 이것을 저희도 신중히 검토해서 반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두루 고려할 때 저희로서는 나름대로 균형을 잡아서 방송사업자나 학계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생각되고, 마지막으로 어디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방송평가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적절한 내용을 제재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방송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동인을 제고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런 평가항목을 개발함에 있어서도 프로그램 내용이나 가치 실현을 상위에 두고 그 목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런 언급도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슨 잘못된 것을 자꾸 찾아내서 감점을 더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3회 이상 위반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지요. 방송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되, 항목별로 3회 이상 된다면 이것은 방송사를 운영하는 데 너무나 부주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 달라. 예를 들어서 1회 위반이 있으면 ‘2회 위반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그래서 방송의 품격을 높여 달라는 것이 저희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런 목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짤막하게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말씀하시지요.

○ 김석진 상임위원

- 지금 이 사안을 우리가 접근하는 자세는 저는 방송의 품격에 관한 문제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지금 선거를 치러 보면 우리 국민이 전부 열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이 그 이후에 종합편성 PP들도 점점 영향력이 확대되어 나가고 있고 시청률도 이제 만만치 않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낮에 낮방송 같은 경우는 온 국민이 TV를 볼 수 있는 국민들은 전부 종합편성 PP들을 통해서 정치적인 토론, 정치적인 입장 이런 논쟁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올바른 방송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도 국민들에게 편안한 방송을 돌려주고 품격 있는 방송을 제공하도록 유도해야지, 방송에 나와서 서로 시청률 경쟁하면서 불필요한, 또는 그야말로 막말 내지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 또 검증되지 않은 정보 이런 홍수 속에서 온 국민이 그것을 듣고서 일희일비하고, 하여튼 온 국민이 좌우지간 전국이 열병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 내는 준거의 틀을 반드시 엄격하게 미리 만들어야만 정말 좋은 품격 있는 방송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감에서 우리 사무처에서도 어떻게 하면 좋은 방송을 제공할 수 있느냐? 방송 품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자세가 우리 정부기관에서 갖추어야 할 자세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마지막으로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언제 이야기합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찬성 입장이지니까요.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지요.

### ○ 고삼석 상임위원

- 제 입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제재나 행정지도, 제재수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서 공정성 위반뿐만 아니라 객관성 위반, 그리고 오보나 막말방송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중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결정이 이번에 저희 평가규칙 개정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시는 위원장님과 저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법정제재가 소송으로 갈 수 있지 않으나 그러는데 실제로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소송으로 갔습니다만 또 많은 경우는 방송사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즉,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법정 소송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방송사들의 입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하더라도 일부 법정제재에 대해서는 방송사들이 수용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 그리고 최근까지 계속해서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대선 공약 이행의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이 이런 부분은 전혀 무관심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방송 심의의 불공정 논란이 빚어지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앞서 이기주 위원님께서 “김재홍 부위원장의 입장이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견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위원장과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 많은 부분 동의하고 또 공감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부위원장님 개인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견해는 아닌 것 같다. 다른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절차와 일부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달리 하기 때문에 이 안전 처리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을 최종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이기주 상임위원

- 2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 안전에 대한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도 논의를 해 보니까 저희 다섯 분의 위원님들 논의하는 관점이 다른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바람은 이렇습니다. 저는 공무원 출신이라 더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런 안전을 논의함에 있어서 저희가 정파적으로 구성이 되고 정당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되는 위원님들도 있지만 저는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기관, 위원회 형태의 규제기관은 FCC(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가장 큰 모태가 되어서 출발을 했는데 구성 자체는 정파적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전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관점, 시각보다는 전문성에 기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는데 오늘 역시 이런 안전을 논의함에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기보다는 정책적·행정적·제도적·전문적 관점에서 앞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 어디를 보더라도 ‘정치적 중립’ 이런 것은 최대한..., 물론 성향이나 배경이나 철학은 그런 쪽에 기울 수 있지만 너무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숙려

기간입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저희 제3기 출범할 때 이 부분도 많이 논의가 됐지만 작년 1월부터 업무계획에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고 토론이 됐습니다. 또 제 기억에 이 안건만큼 두세 달 동안 집중적으로 위원님들 다섯 분 간 많은 토론과 논의를 한 안건도 없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예고안보다도 많이 의견이 수렴되고 보완된 안이 오늘 마련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이 의견수렴이 잘 안 됐다, 숙려기간이 더 필요하다, 충분히 논의할 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지 않느냐, 저희가 기본적으로 중앙 행정기관이니까 이것을 행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미 데드라인이 지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논의했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결정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총선 이런 것은 잘 모릅니다. 이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왜 4월 총선이 고려가 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진경과를 쭉 보면 이것은 작년 말까지 어떻게 해서든 시행이 되도록 하려고 쭉 노력해 왔고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또 일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 때문에 계속 이렇게 딜레이 되어 온 것이지, 총선이라는 것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고 위원님 의견대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면 총선이 더 가까이 오는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오늘은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예고안이 나름 고민도 많이 했고 토론도 많이 해서 마련된 안이라서 저는 거기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중에 처음에는 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갈수록, 오늘 보니까 두 분인 것 같은데 그분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이해관계자들 의견도 수렴해서 마땅찮지만 그래도 이 안은 미니멈이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결정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마지막으로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봐서 말씀드리면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은 작년 말까지 개정이 됐었어야 하는데 이것이 올해로 넘어와서 논의가 됩니다. 아까 방송기반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할 때 1월까지의 기존의 규칙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2월 이후 부분만 새로운 평가규칙에 의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과 관련한 가장 논의가 되고 있는 공정성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연구용역 과제를 준 것이 있는데 그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반드시 보고 하자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국회에서도 반드시 그것을 보고 하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의견 제출기간 동안 나온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다 보니까 늦어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지만 지금 이제라도 빨리 최소한 한 달은 저희가 구(舊) 평가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빨리 결정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면 지금 김석진 위원님과 이기주 위원님은 찬성하는 의사이고, 그다음에 고삼석 위원님은 반대하는 의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찬성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의록에 남기고 이 안은...

#### ○ 고삼석 상임위원

- 의결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 ○ 이기주 상임위원

- 부위원장님은 찬성하신 것입니까, 반대하신 것입니까? 그냥 퇴장하신 것입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자리에 안 계시니까 의견을 들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안전 상징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아까 이기주 위원님 말씀 중에 상당히 신중하게 항상 말씀하시는데 듣는 입장에서 좀 걸린 부분이 당연히 이기주 위원님은 정책적·제도적·행정적 차원에서 안전을 심의한다, 그런데 마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 이기주 상임위원

- 고 위원님이 안 그렇다는 이야기는 안 했는데….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정책적·제도적·행정적 관점에서 안전들을 심의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파성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파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저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성과 관련된 방송심의, 평가는 가장 직접적으로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정당 그리고 후보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의견 제출의 주체로서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고, 또 그 의견 중에 저희들이 타당한 부분은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차원에서 제가 부분적으로 그런 입장들을 대변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잠깐만 짚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마지막으로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을 개진해서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지요. 우리가 중앙 행정기관인데 정파성이 속성상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말에 전폭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두 분 위원들께서 반대의견을 내신 충정은 언론자유가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자율성을 보장하는 일이다, 저는 전폭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방송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이런 현

실을 반영해서 빨리 우리가 틀을 만들어 줘서 품격 있는 방송을 만들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도 정치성은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 배제해서 정말 좋은 행정기관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결정들을 해 나갔으면 하는 충정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위원님들 세 분이 찬성하시고 한 분이 반대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논의사항 없으시면 다음 회의는 1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2016년 제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43분 폐회 】